

복구설계서 []승인신청서 []변경승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허가(신고·매각·무상양여) 사항	허가(신고·매각·무상양여) 번호	허가(신고·매각·무상양여) 기간	허가(신고·매각·무상양여) 내용	
	허가(신고·매각·무상양여) 면적(㎡)	복구·복원 예치액(천원)	복구면적(㎡)	
설계내용	복구설계서 작성자	복구공사금액	복구공사기간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사유	

「산지관리법」 제4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의 []승인 []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

첨부서류	복구설계서 1부
수수료	1.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.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: 2만원 나.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.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: 없음

유의사항

복구설계서는 「산지관리법」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